

3대 전문인양성교육제도의 개혁방향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개혁

박 홍 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1. 머리말

정부는 1995년을 교육제도와 사법제도 개혁의 해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 중에서도 연초부터 치열하게 논의된 것은 법학교육제도와 사법제도의 개혁이다. 곧 2월 초,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개편하고 그 합격자 수를 현재의 약 3백 명에서 2천 명으로 대폭 늘리며 법관을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보도가, 이어 전국의 80여 법학과 중에서 5, 6개를 미국식 법과대학원으로 개편하여 변호사를 양성하고 나머지 90퍼센트 이상의 법학과는 법무사 양성 또는 교양을 위한 법학과로 개편

한다는 식의 보도도 나왔다.¹⁾

그 수의 극소로 인하여 특권계급화된 법조인 수를 늘린다고 하는 데에는 기성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환영했으나, 법학교육을 미국식 엘리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이분하여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사법제도 1백년을 맞는 4월 25일에 최종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나, 사법제도에 대한 약간의 개선안만 발표되고 법학교육개혁은 다시 7월로 미뤄졌다.

현행의 극소수 합격자만을 배출하는 암기식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일정한 수준의 법학교육 이수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며, 현행의 사법시험준비에 급급하는 법학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는

1) 이는 1995년 2월 6일, 신규로 임용된 서울법대 교수 출신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5. 2. 16.

원칙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내용이 아닌 형식 문제로 미국식 로스쿨이나, 독일식 절충이나, 아니면 현행제도를 유지한 채 1, 2년의 수업연한 연장이나 하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필자는 외국식 제도의 그 어느 것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개편된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식은 전 세계에서 미국 등 극소수에 국한된 특수한 법학교육 형태일 뿐, 그것이 결코 세계적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나아가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소위 세계화가 급방 이룩되는 것이 아님을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미국식은 물론 어느 나라를 본받는다 고 하는 사대적 발상 자체부터 버리고 우리 나름의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의 보편적인 법학교육 형태는 학부과정의 충실한 일반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여 그 이수자의 상당수에게 일정한 전문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다시 그 이수자의 상당수에게 변호사 등의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의 7천여 법학과 입학정원의 반수 이상을 1차로 선발하고, 그들에게 2년 이상의 전문실무교육을 실시하고 2차로 다시 반수 이상을 선발하여 매년 2천 명 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그 형태가 아니라 내용, 곧 교육의 실질성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법학과의 교수진이 실무경험자를 중심으로 질과 양의 측면에서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수업의 과목이나 방법도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론과 실체가 유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어떤 실무교육도 불가능하다. 그러한 현상은 법이 급격히 변동하는 현대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일방적 강의식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가지고 있다. 법과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법학교육은 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하여 연습과목을 중심으로,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화식 수업이 대폭 늘어나 기초공통과목의 강의식 수업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타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여건의 문제 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은 단순히 이상의 지엽적인 개선으로 개혁될 수 없다. 필자는 우리의 사법제도가 지극히 기형적인 특수체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제도는 보통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정의된다. 입법부나 행정부와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해 극히 제한된 수가 합격하여 배출된 관료로서의 판·검사나 변호사가 독점하는 사법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런 민주적 요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선진 민주국가의 사법제도는 반드시 동일한 형태는 아니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배심제 내지 참심제를 공통적으로 가지며, 재판관을 국민이 명망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국민의 재판참여는 현재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충분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 중에서 공선제를 통하여 재판관을 임명하는 법조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사법은 법률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법은 그 이념부터 국민을 위한 민주화로 재정립하고 그 적용과 이용을 민주화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과정을 민주화하여야 한다. 먼저 그 이념의 측면에서 여전히 반인권적 정치

재판이 자행되고 있고, 법의 계급성을 드러내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이 항존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또한 국민이 재판을 이용하는 데도 계급성이 드러나 그것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따라서 가난한 형사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빈곤한 민사소송 당사자에게도 적극적인 소송부조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수임료는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소위 전관예우는 개업의 금지나 제한을 입법화하여 근본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자는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²⁾을 검토할 수 없다. 여기서는 법학교육과 관련된 사법제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언급한다.

2. 법조인의 수와 질 그리고 양성방법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의 등의 사회가치를 포함한 특수한 가치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에 내재하는 가치를 유지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여 법질서를 실현하는 책임을 지는 법조인은 양적으로 그 적정수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질적으로도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와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양성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1) 법조인의 수

1995년 2월 15일 현재 한국의 변호사수는 3,510명(단, 개업변호사는 2,861명)으로 인구 1만 명당 변호사수는 0.78명이다. 이에 비해

1992년말 현재 일본은 각각 14,700명(인구 1만 명당 1.19명)이고, 프랑스는 25,900명(4.66명)이며, 독일은 62,000명(10.13명)이고, 영국은 60,000명(12.1명)이며, 미국은 761,000명(31.12명)이다. 따라서 인구비율로 따져 한국의 변호사수는 미국의 40분의 1도 안 된다.

변호사만이 아니라 법조인수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몹시 적다. 위의 나라 순으로 보면 법조인수는 일본(92년) 18,673명(1.52명), 프랑스(92년) 31,890명(4.28명), 독일(92년) 84,000여 명(11.5명), 미국(92년) 769,600여 명(31.47명)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2월 15일 현재 법조인은 판사 1,171명, 검사 917명, 변호사 3,510명을 합쳐서 모두 5,598명으로 인구 1만 명에 1.25명이다. 만약 매년 2천 명씩 사법시험 합격자를 내어 10년 후인 2005년에 2만 명이 되고(5천 명 사망을 가정), 인구가 5천만 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1만 명당 법조인수는 4명이 되어 위의 프랑스 수준에 가깝게 되나 여전히 독일의 반, 미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수의 증가가 특히 요청되는 이유는 법조인수가 적어서 판·검사의 경우 업무가 폭주하여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변호사의 경우 국민이 충분히 법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의 경우 법관 1인당 사건처리수는 3,834건으로서 공휴일을 뺀 1일 평균 12건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는 1분에 1건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법원도 있다. 법원별로 보면 지법 판사가 1인당 4,576.8건, 고법이 399.4건, 대법이 1,264.2건이다. 검찰의 1년간 사건처리수도 130여만 건으로서 1인당 월평균 250~3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 10분의 1인 30~50건에 불과하다. 검사수는 한국이

2) 졸저,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참조.

989명인 데 반해 일본은 2,103명이고, 연간 사건수는 한국이 130만 건이나 일본은 30만 건이다. 1992년의 경우 고소고발 사건은 한국의 경우 62만 2천여 건으로 일본의 52배에 달했다.

1993년의 경우 민사소송수 223,407건 중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37.6퍼센트에 불과했고 나머지 62.4퍼센트인 139,000여 건은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 특히 소가가 낮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97.4퍼센트가 변호사 없이 진행되었고,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단독사건 경우에도 35.4퍼센트가 변호사 없이 진행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의 변호인 선임률은 34퍼센트로서 단독의 경우 32.4퍼센트, 합의의 경우 39.9퍼센트였다.³⁾ 그리고 93년의 경우, 1심 형사공판사건 16만 5천여 건 중 12.5퍼센트인 19,600여 건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90퍼센트 이상은 고수입이 보장되는 소송업무에 종사하고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2백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대폭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법조인층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으나, 한국의 국민 1인당 법조인수는 외국에 비하여 엄청나게 적으므로 그러한 저항은 기득권자의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모든 판·검사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판·검사수도 늘어나야 하고, 특히 시민을 위해 사법서비스를

담당하는 변호사수는 더욱 늘어나싼 값으로 소송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산하면 질이 낮아진다고 아우성이나 그 질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질이 낮은 법조인은 당연히도 태되어야 한다. 과거에 극소수로 합격한 이들도 곧잘 악덕변호사로 변하는 것을 보면 질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다.

2) 법조인의 질

서구에서 법조인은 의사와 성직자와 함께 전통적인 전문직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념적 특징을 갖는 직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⁴⁾

첫째,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학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의 고유한 능력은 개인이 행하는 청구나 공적 기관이 행하는 결정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권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인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⁵⁾

둘째, 통상적인 직업인의 업무가 그 종사자의 사적 이익의 추구에 있음에 반하여, 법조인의 임무는 의뢰자와의 개별적 관계에서 공공봉사라고 하는 이타주의의 정신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타적 공공성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의 기본적인 직업정신이어야 한다.⁶⁾

셋째, 법조인이 법에 내재하는 가치를 유지하고, 고도의 학식과 기술을 공익을 위하여 충실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독자의 조직에 의한 자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직은 법조인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격

3) 이상 1994년 『사법연감』에 의한.

4) Philippe Nonet and Jerone E. Carlin, "The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 vol. 9, Macmillan, 1968, p.66.

5) 위의 글, p. 67.

6) Roscoe Pound, *The Lawyer from Antiquity to Modern Times*, West Publishing, 1953, p. 5.

을 인정하며, 법조인과 의뢰자 및 법원과의 관계에 관한 윤리를 정하고, 그 위반자를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기준에 비취 우리 법조인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공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먼저 저질의 법 서비스를 극소수의 법조인들이 독과점하여 터무니없는 고가로 팔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입료는 독일의 10배, 미국의 3배 정도이고, GNP를 감안하면 독일의 40배, 미국의 12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1995년 1월에 수입료의 상한선을 100~500퍼센트나 올린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다수입료는 전판예우라고 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풍토로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수를 대폭 늘리고 수입료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법시험제도의 개편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방법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그리고 연수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은 반드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사법시험은 훌륭한 법조인의 자질을 검정하는 시험이기 이전에 엄청난 부와 권력 및 명예를 동시에 얻는 벼락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되어 법학과는 물론이고 타학과 학생들도 그것에 매달리나, 백 명 중 99명은 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은 다른 공무원시험과

같이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된다. 이는 법학 전공자에게만 시험자격을 주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근거했으나,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의해 사법시험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고 있고, 앞에서 법조인의 질 문제에서 보았듯이 오늘날의 법조인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도 시험자격은 법학교육 이수자에게 제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의사나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 시험에 그 수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험자격은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하고, 아울러 응시자격도 3회 정도로 한정하여야 불필요한 장기간 수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험과목도 폭넓은 교양과 전문성을 아울러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개편만으로는 법조인의 자질향상 및 서비스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법학교육의 개선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학교육 자체의 개선이 아니라 법학교육의 연장으로서 법과대학 6년제 내지 전문법과대학안이 법학교육의 개편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3. 법학교육의 개편

1) 법학교육의 문제점

법학교육의 제1차적인 사명은 이상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법학과 또는 법과대학은 순수하게 직업으로서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대다수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나, 사법시험의 관문이 워낙 좁으므로 곧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 물론 처음부터 행정관료나 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으나 그 수는 소수이고, 사법시험을 포기한 상태에

서 진로전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대학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법학과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만을 그 교육목표로 삼을 수가 없고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전국의 대부분 법학과는 사법시험 과목 위주로 교과과정을 두고 법조인 양성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당수 법학과는 법조인 양성에도 실패하고 있다. 그 첫째의 원인은 구조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 시험이 워낙 어려워 졸업 전 합격자는 매년 졸업생 7천여 명 중 극소수이고, 매년 합격자수인 3백 명 미만이 매년의 졸업생 중에서 평균적으로 배출된다고 해도 그 수는 4퍼센트도 안 된다. 따라서 나머지 96퍼센트는 다른 진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1994년의 36회 사법시험 응시자는 16,390명으로서 그 중 290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16,100(전체의 98.2퍼센트)명은 소위 '낭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학과는 사법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결과 법학과는 사법시험의 수험기관으로 전락했으며, 그나마 수험기관으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사설 고시원에 학생들을 뺏기고 있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므로 그 지적 토대가 매우 협소하고 허약하며 외국어 실력이 떨어져 앞으로의 사법 전문화와 국제화에 대비할 수도 없으며,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우리의 법학이 이론 중심이고, 그 교수들이 출제하는 사법시험 문제도 이론 중심이므로 시험 합격 후 실무에는 법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거의 쓸모가 없고, 예컨대 소장도 쓸 수 없는 소송법이 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문제의 고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나아가 법학과 특유의 문제도 안고 있다. 그 어느 학과의 경우에도 전공과 장래 직업은 반드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도 수많은 타전공분야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이 가져다 주는 출세지향적인 측면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그 전공분야를 졸업해서는 제대로 된 직업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다.

지적 토대의 부족이나 외국어 구사능력 등의 문제도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에 공통된 문제이나, 그 모든 학과가 대학 수준이 아닌 대학원 수준으로 개편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학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2) 법학교육의 개혁

①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원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이 논의되어 왔으나, 무엇보다도 먼저 사법시험 합격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매년 2천 명을 합격시킨다고 하면 현재의 졸업생 7천여 명 중 약 30퍼센트가 법조인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사법시험의 관문이 넓어지는 경우 상당수의 법학과는 합격자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나, 반이상의 법학과는 여전히 극소수 합격자 배출에 그칠 것이다.

② 법학교육의 개혁

법학교육개혁의 근거에는 우리의 대학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여기서는 먼저 개혁의 중심이 법학과와 교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전히 전임교수가 적으므로 교수의 증원도 시급한 문제이나 질적인 수준은 더욱 큰 문제이다. 곧 자기 전공에만 매몰되어 자기 전공을 무조건 필수로 하고 진부한 강의

내용으로 시간을 때우기에 급급하며, 보직 등의 영달에만 연연하는 자세를 비롯하여 무수한 문제가 있다. 특히 수험용 교과서나 문제집의 출판에 평생을 보내고 시험위원이나 각종 사회 활동에 골몰하며 돈을 많이 주는 수험예비학원에 출강하는 자세도 큰 문제이다. 학생들의 진로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속물적인 직업인으로서 명예와 치부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권력지향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어용 교수도 아직 많다.

무엇보다도 교수들은 자신의 역할인식을 새롭게 하고 법조인에 필요한 법적 사고를 철저히 훈련함에 힘을 기울여 현대사회의 변화에 상응한 훌륭한 법조인을 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곧 앞으로의 법학과는 판·검사나 변호사만이 아니라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종사할 법률 전문가, 섬외업무등 국제적 능력과 감각을 갖춘 법률가,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가 등을 양성하는 실무직업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그 중심은 법학교수들의 의식개혁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에 방향을 주고, 사회적 실용성을 가지면서 이론도 겸비하는 법조인을 배출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론과 실체가 유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행태로는 어떤 기초 실무의 교육도 불가능하다. 그러한 교육으로는 법이 급격히 변동하고 더욱 복잡하게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기존의 교과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수업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필요로 하다. 교과서나 교재는 실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엮어져야 하고, 각 논점에 대한 비교법, 법정책적인 관점의 입법론과 해석론은 물론이고, 정치학·경제학·사회학·심리학·윤리학적 조명, 현실적인 문제점, 판

례의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와 대학의 교류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수가 실무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법조인이 대학의 강의에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방학기간은 물론 수업 기간에도 인턴십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실무와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 법학교육 내용의 문제

필자는 현재의 법학과 교육의 내용이 대폭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부분의 법학과에서 사법고시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다고 하는 점이 문제점이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어나도 그 합격자수는 제한적일 것이고, 법학과 졸업생의 상당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다양한 직업적 필요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하고, 특히 선택의 폭이 넓혀져야 한다. 현재의 사법시험 과목이 법학교육의 중추과목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만으로 현대사회의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 과목에 그러한 선택과목은 물론 어학과 교양과목의 폭을 넓혀야 한다. 곧 법률가의 양식과 균형감각을 키우기 위한 법학의 인접과학, 예컨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등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 능력과 외국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런 폭넓은 공부의 결과가 사법시험 합격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시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법학교육도 그렇게 실시되어야 한다.

④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우리의 법학교육은 일제시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개혁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없다. 법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한 것

은 법학과의 이수연한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몇 년 전 종래 140학점을 150학점으로 늘리는 것으로 일부 실현되었다. 그러한 학점수 확대는 몇 가지 법학과목의 증대를 가능하게 했으나, 사실상 법학교육의 내실화라고 하는 점에서는 무의미했다. 법상 교양과목을 3분의 1로 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으므로(이는 해방후 미국식 대학제도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교양과목 50학점을 제외한 법학 및 일반선택 100학점의 이수가 늘어났을 뿐 실제로 훌륭한 법조인의 양성에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는 도저히 평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은 약 75학점 전후의 법학과목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3학점 단위로 보면 25과목 정도이다. 한 학기에 20학점을 이수한다고 보면, 법학과목만을 이수하는 경우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 특히 법학과의 경우 그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다른 모든 학과의 경우와 같이 법학과에서도 가능한 법학전공과목을 증설하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 교양과목 3분의 1이라는 법상의 규제가 풀렸으므로 다른 모든 학과와 같이 법학과에서도 대부분의 이수학점을 법학전공으로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되면 법학과에서 제대로 된 교양교육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미국의 법과대학원이 3년 과정이지만 순수하게 법학만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2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는 독일의 4년 과정에 비하면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일제시대에도 3년이었는데 비하여 해방후 지금까지는 상당히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교육이 대학의 사명으로 되어 있는가? 더욱 큰 문제는 대학의 교양교육이 대체로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고교교육 수준의 답습이고 교수진도 젊은 강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형화된 과거식의 교양교육이 아니라 각 전공분야마다의 독특한 교양교육이 요망된다. 예컨대, 법학과의 경우 일반 인문·사회과학적 입장에서의 법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교육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교양교육의 개편을 토대로 하여 전공교육을 더욱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개혁된다면 현재의 4년제가 반드시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⑤ 법학교육 방법의 문제

우리 대학은 일방적 강의식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가지고 있다. 법과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법학교육은 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하여 연습과목을 중심으로,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화식 수업이 대폭 늘어나 기초공통과목의 강의식 수업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타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여건의 문제 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법과대학원 설치의 문제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법조인의 지적 수준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식의 법과대학원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식으로 현재의 법학과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과 법과대학원 및 법학과를 병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6년제 법학과와 정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법률지식을 가르치는 4년제 법학과로 2원화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정도의 차이일 뿐 상당수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문제의 구조는 거의 같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학교마다 수준의 차

이가 있으며 사법시험의 합격률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우리식의 이원화 논의는 없다. 일본에서도 수없이 법학교육 개혁안이 검토되었고, 미국식 법과대학원을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그것은 법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일부 법학과를 그런 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사법시험에 대한 수험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일거에 개혁하여 소수의 법과대학원 입학시험으로 개편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법과대학원 개편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식 법학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미국의 대학이란 소위 교양대학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직업교육은 대학원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제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미국에 특유한 것이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전문직업인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들이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해야 질적 수준이 반드시 높아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고 대학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반드시 교육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제도는 미국에서도 취해진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교육기간의 연장은 대학 스스로 결정한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대학 스스로 법학과의 교육연한을 늘리는 것은 대학 자율화의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학과를 4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대학마다의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어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대해서만 변호사 자격 또는 변호사시험의 수험자격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가 특

정 법과대학의 6년제화 또는 법과대학원 설치를 주도한다는 것에는 더욱 큰 문제가 있다. 국가로서는 학년제 연장을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어느 대학에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의 수험자격을 법학과 4년 수료 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어느 학교 출신만을 지정할 수는 없다. 법학과의 이원화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방하되, 국가 주도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법과대학원 공인제도이다. 일정한 자격요건과 기준에 합당한 법과대학원으로 구성되는 법과대학원협회는 1921년, 변호사 지원자는 다음 요건에 맞는 법과대학원을 졸업할 것을 결의했다. 첫째로 2년간의 대학과정을 마친 자를 입학조건으로 하고, 둘째로 3년 이상 수학하고, 셋째로 충분한 도서관을 비치하고, 넷째로 충분한 전임교수를 둘 것이었다. 나아가 공공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위 기준에 맞는 대학원의 이름을 공표한다는 것도 결의하고 2년 뒤에 그것을 공표했다. 1950년에 와서 위 기준 중 2년간의 대학 재학요건은 3년간으로 연장되었고, 그것은 1952년부터 시행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공인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사람들은 법, 법원, 검찰 등 사법을 경원한다. 어둡고 차갑고 권위적이라는 인상이 있고,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들이나 범죄인들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매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물론 삶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가치선택이 행해지고 있다. 재판이 시민의 감각에서 멀어지고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그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보편성의 인식이다. 다른 나라에서 법조인수가 인구비례로 적정하고, 법조인 양성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며, 의회나 행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것을 통제하듯이 국민이 사법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현장치인 법원을 통하여 법조인에 의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 주도로 제기된 사법개혁 논의는 법조인수를 늘리고 법과대학을 대학원 차원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법조인수는 인구 1만 명당 14인 정도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에 2천 명 정도 수준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정부의 개혁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법과대학을 대학원 차원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정부개혁안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식 법학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그러한 교육제도는 미국에 특유한 것이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전문직업인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들이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해야 질적 수준이 반드시 높아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그런 논의가 없고 대학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반드시 교육연환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의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도리어

우리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론과 실재가 유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전통으로는 어떤 실무교육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상의 개혁만으로 진정한 사법개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제도는 보통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정의된다. 입법부나 행정부와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해 극히 제한된 수가 합격하여 배출된 관료로서의 판·검사나 변호사가 독점하는 사법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런 민주적 요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선진 민주국가의 사법제도는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배심제 내지 참심제를 공통적으로 가지며, 국민이 명망있는 변호사 중에서 재판관을 선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먼저 소송비용을 대폭 줄이고 공적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곧 법률부조제도를 확충하고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형사절차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과정을 철저한 구두주의와 공개주의로 개혁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개혁논의는 아직도 없어서 유감이다. ■

박홍규/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일본 오사카시립대 대학원 박사과정과 영국 노팅햄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영남대 법학과 교수로 있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며,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노동법』, 『사법의 민주화』, 『한국과 ILO』 등이 있다.